

# 교원업적심사위원회 규정

- 제정 : 2006. 3. 1.
- 개정 : 2013. 10. 29.
- 개정 : 2018. 3. 1.

**제1조(명칭)** 본 위원회는 수원과학대학교 교원업적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.) 전임교원의 업적심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구성)** 위원회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교학처장이 위원장이 된다.

**제4조(위원장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임기)**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**제6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전임교원 업적 심사
2.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자료 심사.
3. 평가에 관련된 자료 수집
4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7조(회의)** ①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.

**제8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9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일반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10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3-0-6 교원업적심사위원회 규정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